

綜合討論 要旨

안경환 교수 : 사회를 맡은 안경환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네 시간에 걸쳐서 세 분의 주제 발표자와 여섯 분의 지정토론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의 종합토론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특히 네 가지로 요약해서 각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가 지명해서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명자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각각 5분씩 드리겠습니다. 셋째, 나머지 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전부 토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일반 참가자 분들의 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의할 네 가지 문제점은 첫째, 법조인들의 재교육문제 즉 연수원을 포함해서 전문법원 문제, 전문변호사의 문제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이 문제를 권성 부장판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두번째는, 법학교육에 있어서 실무자의 참가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오승 교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병국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는, 대학교수의 자질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길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 대학원생 1명과 학부생 1명의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권성 부장판사 :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연수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법관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독판사급에 대한 재교육,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 대한 재교육,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들에 대한 재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법관에 대한 해외연수가 시작되어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교육과정에서, 우선 사법연수원과정에서의 재교육은 주로 실무처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서로 교환하는 자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재교육과정에서 논의된 문제들이 책자로 정리되어서 이른바 “재판연구자료”로 수집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관이나 변호사들이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역시 그동안 비교법적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서 예를 들면 이번의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개혁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축적된 해외연수의 결과가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한편 시정할 점도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법관이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견문을 넓힐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의 중요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법관의 경우만 말씀드린 것이고 검찰의 경우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에는 검찰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구와 프로그램이 있고 법원 못지않게 실적있는

재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는 전문적인 재교육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협이 주관하는 전문적인 재교육 기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기구적 차원에서 법관 재교육문제를 설명드린 것이고, 다만 법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법관업무의 성질상 재교육이라는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도 또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재교육은 서로가 분담한 기술을 전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학이론이나 재판이론은 로마법 이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해 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법관의 재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이론, 기본원칙을 재음미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환 교수 : 권부장님의 기본요지는 지금 현재 법관 재교육제도에 법원이 주체가 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권성 부장판사 : 예, 그래서 사회자가 말씀하신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약간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관연수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관은 새로운 기술을 재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기본이론과 원칙을 재음미할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법관에게는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어떤 절차나 기구를 통한 재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관들에게는 대학교수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년과 유사한 연구법관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법관 재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궁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토의를 통해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법관 재교육에 관해서 발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경환 교수 :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법학교육에의 실무자 참가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권오승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권오승 교수 : 법학교육에 실무자를 참여시키자는 이야기는 지금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실제문제 해결능력을 고양하자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의 대학교육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두 가지 보완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연습강좌라든지 절차법 분야라든지 아니면 특히 실무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실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참여시키자는 방안은 큰 무리없이 양 기관간의 협조만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급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연습강좌와는 별도로 아니면 하급학년에, 2학년 정

도의 코스에 소위 독일식의 Übung 제도를 대폭 도입해서 200명을 10개 반으로 나누어서 20명 단위의 Übung 코스에 실무자를 대폭 활용해서 개념적으로 배운 이론을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초급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 부분적·보완적으로 실무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법학교육이 전문교육을 지향하는 법학교육과 지금식의 일반교육을 지향하는 법학교육으로 이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교육은 지금 기준으로 따져서 1년에 1,000명 정도에게 실시하고 나머지 6,000명 정도에게는 일반교육을 하되 결국은 실제로 필요한 교육, 사법시험을 필요로 하는 법률문제를 가르칠 수 있는 식으로 교육을 이원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전문교육에서는 지금의 사법연수원 교육이 전문교육분야로 흡수되어 6년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법학교수의 대부분은 법조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결국 법학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법조와 대학간의 이원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하는 쪽으로 대폭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안경환 교수 :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민병국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민병국 변호사 :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한문은 우리의 것이고 법률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한문은 중국의 것이고 외국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외국의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의 법과대학에서 영어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법과대학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둘째는, 국제화는 국제수준을 의미합니다. 지금 같은 수준은 안 됩니다. 법학교육과 법조 전부가 그렇습니다. 엄격한 학제를 만들고 학사규율을 세워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송상현 교수 : 지금 우리는 독일어 위주입니다. 영어하는 사람은 소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불어와 함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에게 펼쳐진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졌습니다.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균형이 맞도록 제도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우려되는 측면은 죄다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외국의 것이 부지불식간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비교법적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외국의 것을 소개하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외국제도나 법률문화에 대한 소개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위험부담이 있고 제대로 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상응하는 제도와 연결시켜서 연구한 여러 가지 결과를 내놓고 가르치지 않으면 학생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우려되는 일입니다. 또한 국제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경환 교수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길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길준 교수 : 김찬진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불공정한 인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교수들의 업무부담이 많습니다. 우선 책임시간만 보더라도 9시간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강의하는데 3시간 준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와 강의준비시간을 합치면 36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은 하루에 6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학교수로는 엄청나게 과중한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빈약한 연구시설, 연구환경이나 연구여건입니다. 다행히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평가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수들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의 연구년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제도가 점차로 도입되어서 교수자질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안경환 교수 :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법과대학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법과대학 학생들이 사법시험제도를 비롯한 법학교육문제, 법조인 양성문제에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개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회장이 선생님들이 토론한 이야기 중에 지적할 내용과 특히 학생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법과대학의 교육연한 확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 먼저 외람되지만 사법제도와 법학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 판사님, 변호사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에 법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대 2학년 이상 학생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9%가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응답자의 87%가 현재의 법학교육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사법과정의 실질 법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의식과 인간적인 각성하에 사실여부와 기본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학을 인간학이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 부분을 이화여자대학교 최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첫번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제도와 의식개혁이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적인 부분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법과정에 총체적 의식이 필요하다면 사물을 총체적으로 조망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없다라는 현실에서 볼 때 지금까지 그 나름대로 가장 적합한 대안인 민주적 과정이 사법제도에 영향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점해소와 사법민주화, 이 부분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법조 양성과정에 있어서 역시 사회에 부응하는 법조전문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학교육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제, 교과과정, 교수방법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학제에 있어서는 작년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학제가 바뀌어야 한다. 학제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예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법학 학사과정에서 늘어나는 학제의 저학년 때 실시할 수 있는 교양인·사회인으로서의 과정을 충실히 하면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 교과과정 개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작년 설문과정에서는 학제적 과목, 기초적 과목, 사회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법적 접근을 이룰 수 있는 과목들이 추진되어야 하고 임상과목, 사회현상과 본질을 구체적으로 체득하기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 법원, 검찰청, 교도소, 행정기관 등의 연수활동을 정규과정에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문제중심의 강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속에 단기적 개혁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과감한 실험정신을 학생들은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세번째 질문입니다.

네번째는 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것인데, 현실성을 보류하고 정신적으로 잘 하자는 태도를 넘어 서려면 일정한 민주적 참여와 합리적 판단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과 방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입니다.

대학원생: 저는 오늘 심포지움에서의 기본적인 접근은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사회에게,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가들의 개인적인 책임이기도 하고, 법조사회 전체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법조사회에게 주어지고 있는 국민대중의 불신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외국과의 복잡한 거대에서 우리의 전체 이익을 담보해 내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보다 더 직접적인 불만을 보다 생활에 가깝고 보다 밀접한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데에 국민대중의 법조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무엇보다도 법조사회의 분열이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사회의 분열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여러 지역에 따라 나누어진 수직적 분열을 예로 들기 쉽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 일원화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도 더 법조사회의 분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직적 분열보다는 수평적 분열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법조개혁을 얘기할 때 결국 서울법대 동문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아주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들은 오히려 법률가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많은 유사 법률가 집단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개혁의 주체인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 김철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법학과와의 통합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법시험제도에 관해서도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보다 광범위하게 일반화해서 마치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광범한 자격시험으로 만드는 것과 이와 병행해서 보다 전문적인 시험을 지금의 사법시험제도처럼 관리해서 전문적인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한 레벨에서 판사도 임명하고 검사도 임명하는 등의 법조사회의 구성원들을 충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민주화와 엘리트 양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이 민주화와 전문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담보하는 시험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경환 교수 : 지금까지 김태식 법과대학 학생회장이 네 가지 질문을 했고, 대학원생이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법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고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써 만족하고 일단 여기서는 참아주시시오. 사시제도의 개선은 저희들 전부가 해야 합니다. 법학교육에 대해서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법과대학 내에서 학생과 서울법대가 먼저 개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학내문제로 잠깐 유보해 둡시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제가 두 가지 질문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학원생이 얘기한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결국은 학사과정 학생이 얘기한 독점해소와 엘리트 의식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성 부장판사님이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적 과정에 대한 부분은 최병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권성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권성 부장판사 : 학생회장이 질문하신 민주화라는 것이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법원의 경우는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업무는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로 분류됩니다. 재판업무에서는 민주화가 유일한 지도원리가 아니고 민주화는 소송절차의 공정성, 합리성이라는 지도원칙에 용해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화를 따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소송절차의 공정성, 합리성을 논의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소송절차의 공정성, 합리성 문제는 결국은 절차법의 개정노력에 의해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법행정에 있어서의 민주화 문제는 물론 최고지도원리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지도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행정에서는 민주화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제도개혁에 있어서 법관회의의 입법화문제가 있었습니다. 법관회의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법관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법행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이번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법관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계층의 판사들이 참가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법관인사문제에 법관의 의견들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도록 입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병욱 교수 : 영세법학과의 통합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것은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과정에서 무리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의 피나는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우리가 논의하는 법조양성의 문제라든지 사법시험 문제 등에 상당한 조짐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입니다.

안경환 교수 : 신동운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신동운 교수는 지금 지난 2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생담당 학장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계신지, 교수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중간에서 창구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토론중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에 알리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운 교수 : 첫째는, 우리 학생들이 사법시험 위주의 과목에서 벗어나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역으로 걱정하는 것은 다른 과목을 열어주면 학생들이 편한 과목을 찾아가는 역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실무가의 법학교육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형사소송법에 관한 한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판사들이고 그것도 형사소송법을 가장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의 기소유지 낭독,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우리가 형사소송법 시간에 늘 가르치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안경환 교수 : 그러면 공동강좌는 어떻습니까?

신동운 교수 : 그 점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환 교수 :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양동일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양동일 교수 : 독일에서 제가 20여년 전에 공부하면서 들었던 것은, 독일의 법조인이 너무

많이 양산된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적게 배출하는 것보다 많은 법조인을 양산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택시운전수가 되더라도 교통규칙 원칙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때 많은 비판을 받고도 그만큼 양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통일 후에 구동독 지역에 가서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조인들로 충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미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대학수준이 전부 서울대학교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우리는 대학을 마쳤습니다. 우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는 국가학사고시라는 것을 치렀습니다. 이 시험을 치른 뒤 교육부로부터 법학사 자격을 갖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졸업장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앞으로 대학의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과장치를 뚫으로써 보다 충실한 대학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같은 140학점이나 160학점이라 해서 매학기 2번씩이나 4번씩 시험치는데 학생들을 기술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적어도 4년에 두 번 정도 독일과 같이 중간시험을 치러서 그의 교양에 적합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그 다음 과정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는 자유롭게 공부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동안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변호사 사무실 견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어 두루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무엇때문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종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젊은 인재들이 신림동에 와서 아까운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시험은 하나의 시험으로 총괄하고 여기서 나온 사람이 행정관리도 되고 또 법관이 필요하다면 판사시험을 따로 실시해 판사를 뽑아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법조 일원화에로의 교육도 되고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시적이고 이상적인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안경환 교수 : 마지막으로 서원우 학장님의 인사말씀을 들겠습니다.

서원우 학장 :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기에 놓여 있는데 사법부나 법학계가 여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주제가 식상해졌다는 말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시험에 관해서 사법시험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참가시켜 정부에 그 연구결과를 전의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없이, 아무리 심포지움을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교육에 있어서는 법학교육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

조계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원적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은 것을 실현하려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먼 관악에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끝까지 남아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환 교수 : 이것으로서 사법개혁과 법조양성이라는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